

# 프랑스와 독일의 세제개혁 동향

박 균 조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행정사무관

## 1. 들어가는 말

2007년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 분야 공약 중 에서 “빈곤의 고리를 끊는 복지 실현”은 상당 기간 반복해 온 내용이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아동의 의료비 무료화, 중증 노인예 대한 의료비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문 제는 이런 정책들을 실현해 가는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다.

국민의 복지 정책 실시와 관련하여 정부지출 중에서 다른 분야를 줄여 복지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 도 있고, 세제 측면에서 지원을 통한 여러 방안도 생각해 낼 수 있다.

프랑스는 세제측면에서의 저출산 지원 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006년에는 합계 출생률 2.005를 기록한다. 독일은 부가가치세 개혁(16%~19%), 경기의 호전에 힘입어 2006년에는 세수 증가와 함께 실질 경제 성장률은 2.3%까지 회복을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에서 최근에 추진한 가족정책과 관련한 세제개혁 내용과 독일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배경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추진이나 세제 개혁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본 내용은 일본의 지방재무조사회가 발행하는 「地方税」2007년 6월호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한다.

## II. 세제개혁 내용

### 가. 프랑스

#### (1) 최근의 세제개혁과 과제

프랑스는 1980년대에 사회보장 재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속에서 1991년에 일반 사회세(CSG)를 도입한다. 현재는 사회보장 재원 중 사회 보험료가 72%, 일반 사회세 등 재원이 28%로 되어있다.

일반 사회세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급여소득 등 7.5%, 금융소득 8.2%(기타 관련 제세와 합하면 급여소득 등 8%, 금융소득 11%)의 정률로 과세된다.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에 저출산·고령화에 수반한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했다. 구주 시장의 통합에 따라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사회 보험료의 인상은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새로운 소득과세인 일반 사회세가 도입되었다. 이후, 사회보장 재원의 확보를 위해 일반 사회세 세율은 인상되고, 일반 사회세 세수는 소득세수를 상회하는 규모로 증대한다.

- 1991년 : 일반 사회세 도입(세율 1.1%)
- 1993년 : 일반 사회세율 인상(2.4%로)
- 1996년 : 사회보장채무 반제세 도입(일반 사회세와 과세표준은 똑 같음, 세율은 0.5%)
- 1997년 : 일반 사회세율 인상(3.4%로)
- 1998년 : 일반 사회세율 인상(7.5%로)

이후 사회보장 지출의 신장이 예견되는 속에서 중기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이제까지 대폭으로 인상해 온 일반 사회세의 새로운 인상은 곤란하고, 별도로 재원을 구하는 것으로 된다. 사회보장 목적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이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세제상의 현재 과제는 일반 사회세의 소득세와 통합이다. 일반 사회세는 저소득층에도 정률로 과세된다는 것의 비판이 있다. 이것을 소득세와 통합하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소득세 원천징수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행시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보이고 있지 않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다른 구주 제국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인하경쟁에는 걱정을 하고 있고, 독일과

함께 과세 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구주에서의 세계조화를 향한 노력을 행하고 있다.

사회보장 목적의 부가가치세 인상에는 이미 세율이 높게 인상될 여지가 작지만 물가 상승에의 걱정 등 유의점도 있다고는 하나, 국제적인 경쟁에 정합적 이라는 등의 메리트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 보험료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내릴 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보험료 수입의 증가에도 연계되는 것으로 본다.

프랑스는 새로운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사회보장 목적의 부가가치세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일반 사회세 세율을 이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들고 있지만 부가가치세율(프랑스의 정상 세율은 19.6%)의 인상에 수반하는 인플레이 걱정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7년 1월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3% 인상한 독일에서 어떠한 소비활동이 일어날까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상당히 흥미 깊다.

## (2) 조세체계

프랑스의 조세체계를 보면, 국민 부담률은 61%이고, 주요국(일, 미, 영, 독, 불) 중에서도 높다. 조세 부담률은 36.8%로 영국에 이어 높다. 사회보장 부담률은 24.2%로 가장 높다.

조세 부담률의 구성 내역은 소비과세 부담이 15.1%로 가장 높고, 1970년 이래 15~17%의 수준으로 추이한다. 한편, 1991년에 일반 사회세가 도입된 것을 비롯하여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신세가 창설된 점에서 1990년대 이후 소득과세 부담률은 높아지고 있다(9.9%).

부가가치세(1,556억 유로)가 최대의 세수 세목이고 일반회계 세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편, 제 2위 세수인 일반 사회세(668억 유로)는 사회보장 기관에 직접 귀속한다(이상은 2004년 통계에 의함).

이후의 조세 구성비의 예상은 외국에의 이전 가능성이 큰 포인트로 된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용이한 법인세나 부유세는 인상해 가는 방향에 있다.

### (3) 현행 세제의 평가

#### ① 사회보장 재원과 일반 사회세 도입

사회보장 재원은 전통적으로 거의 100%가 고용자 및 피용자에 한하여 사회 보험료로 조달되었다. 1970년대 말 무렵부터 1980년대 초에 걸친 오일쇼크 등의 세계적인 경제 정체, 실업률 상승과 고령화의 진전에 의해 연금, 의료의 증가가 일어나고 사회 보험료만으로 재원을 구하는 것은 곤란하게 되었다.

또한, 임금에 대하여 사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 부담의 증대를 통해 실업률을 높여가는 것의 문제로 되었다.

새로운 재원으로서 개인에 대한 직접세, 법인에 대한 직접세,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과세표준의 폭이 넓은 또 하나의 소득세로 일반 사회세(CSG)를 도입한다.

일반 사회세(CSG)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사회보장 재원의 폭을 넓히는 것과 다른 선진국에 비해 GDP 비율로 보아 낮게 되어 있던 소득세 개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반 사회세(CSG)가 창설되고 나서 15년이 지났지만 소득세 보다 50% 더 많은 세수를 걷고 있다(소득세는 500억 유리에 대하여 CSG는 750억 유리). CSG를 창설한 것에서 사회보장의 재원이 크게 변화했다. 현재는 사회 보험료가 72%, 일반 사회세가 28%이다.

당시, 부가가치세 인상이라는 선택지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EU의 세제조화 때문이었다. 33%의 할증 세율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검토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율을 일방으로 내리고(할증세율 폐지), 동시에 표준세율을 올리는 것은 할 수 없었다.

#### ② 사회보장 재원으로서 부가가치세 인상

사회보장 회계는 지출이 세입을 상회하고 있는 이상 의료비 상승, 고령화 진전 등에 의해 기계적인 지출 증가를 피할 수 없다. CSG의 세율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목적에서의 부가가치세 인상이라는 방안이 들어진다.

사회부가가치세는 사회보장 재원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그 증수에 맞는 사회 보험료의 기업 부담분을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세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뿐 만 아니라 경감세율도 인상의 검토 대상으로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2006년에 사회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개혁은 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월에 부가가치세를 인상한 독일의 개혁 행방을 지켜보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메리트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수입상품에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인건비가 싼 국가와의 경쟁에 받을 집어넣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또한 법인은 외국에 이전할 가능성이 개인에 비해 높다.

사회부가가치세에는 몇 개의 유의점이 있다. 이미 부가가치세 의 표준세율이 높다. 구주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은 19% 전후인 것에 비하여 프랑스는 이미 19.6%이다.

EU에서는 25%까지 올리는 것이 인정되어 있다. 중앙정부와 사회보장 기관 사이에 세입을 분할하면 두 개 조직간에 싸우게 될 가능성도 있다.

CSG의 메리트 중 하나는 이것이 사회보장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 국민에게 명확하게 되어있다는 것이지만, 사회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 가령 자동차를 산 경우 그 일부가 사회보장에 사용된다는 것이 인식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빈곤 가정에 불리하게 된다는 역진성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소득계층에 의한 소비 구조의 차가 없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보아 근거가 있을까는 의문이다.

사회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는 사회 보험료의 기업부담 인하에 의해 고용이 창출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는 것에 의해 임금이 오르고(최저 임금이 인플레이율에 동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이것에 의해 경쟁력이 저하하고 고용 창출이 없어져 버린다. 이 점에서 독일에서 무엇이 일어날까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회부가가치세는 사회보장 적자의 해결책으로서는 아니고 사회 보장료의 대체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증세 안으로는 실현이 곤란하게 된다. 사회보장 회계의 적자 원인은 실업률이 높음에 있다. 사회 보험료의 기업 부담분을 내리면 실업률이 내리고 그 결과로 사회보장 재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인하 대상으로 되는 사회 보험료는 기업 부담분 뿐 이다. 개인분을 내려도 고용에 플러스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개인 부담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증가할 뿐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 측 우파는 사회부가가치세를 지지하고 있지만 좌파는 빈곤자를 압박한다고 주장한다.

### ③ 프랑스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거도 현재도 또한 국제적으로 비교하여도 세수 구성비에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비율이 높은 이유는 프랑스가 부가가치세를 만들어 낸 국가라는 것과 직접세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감이 든다는 것이다.

개인 소득세에 있어 원천징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소득세의 부담감이 옅어 질 가능성은 있지만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면 소득세, CSG,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생각이 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현재, CSG와 소득세의 통합, 부유세, 법인세 그리고 사회보장 목적에서의 부가가치세 인상이 과제로 되어 있다.

### ④ 일반 사회세와 소득세 통합

소득세와 달리 CSG는 가족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률로 과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 때문에 좌파로부터는 일반 사회세를 소득세로 통합하려는 주장도 있다.

원천징수 제도로 이행할 때 기술상의 과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2가지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원천징수에서는 당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고, 이행하는 때에는 과세를 그만 두지 않으면 안 되는 해가 생긴다. 이것을 사전에 알려주면 납세자가 과세되지 않은 해의 소득에 혼합해 버릴 우려가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전년에 대한 세제 조치의 메리트(예를 들면, 고용을 위한 수당)를 어떻게 할까의 문제다.

### ⑤ 법인세 개혁

구주의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되어 있어 인하가 과제로 된다. 법인세 인하 경쟁에는 우려를 갖고 있고, 독·불에서는 법인세의 세제 조화를 노린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

과세표준을 통일한 후에 그 세율에 대해서는 각 국에서 결정한다는 방향에서 2008년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가맹국이 모두 전회일치로 채택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하나의 가능성으로 10개

국 정도가 실험적으로 세제개정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8년 후반에 프랑스가 EU 의장국으로 되므로 금후 논의될 것이다.

#### ⑥ 이후의 조세 구성비

이후의 조세 구성비 예상으로는 외국에 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구별로 보고 있다. 이전할 수 없는 것의 대표적인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다. 이것은 세를 올리는 방향이다. 이전할 수 있는 것은 법인 세나 부유세이다. 이것은 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전망이다.

#### (4) 저출산 대책

많은 선진 제국에서 저출산 경향이 보이는 속에서 프랑스의 합계 출생률은 1994년에 1.66까지 저하했지만 그 이후는 상승 경향으로 전환하고, 2006년에는 2.005를 기록한다.

프랑스의 합계 출생률은 1970년의 2.47에서 1978년에는 1.82로 급속하게 저하한다. 1994년에는 1.66까지 저하한다. 그 후 상승 경향으로 전환하고, 2006년에는 2.005를 기록하여 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원래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애를 갖는다는 선택을 한 자가 일의 면에서 지불하려는 희생을 가능한 한 작게 하는 것에서 애를 낳지 않을까, 낳는 경우에도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애를 기를까, 일을 하면서 베이비 시터 등을 활용하는 것 등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직업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에 의거 출생률은 상승했다.

1990년대 중반 출생률이 저하한 시기에 가족 정책의 목적이 변경되었다. 그 때까지는 가난한 가족에 대하여 지원하고 가족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것이 수입에 상관없이 개인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생각에 섰으며 일과 가정의 양쪽 지원으로 변했다.

가족 정책에 있어 현재 논의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아이부터 되어있는 가족 수당을 첫째 아이부터 지급할까 어떨까다. 또한 금전급부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정비, 서비스 체제의 충실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다.

역시, 가족정책과 관련한 세제상 조치로서는 가족제수(N分N乘방식)외에 육아와 일의 양립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보육비용(자택내외)의 세액공제, 학교에 대한 비용의 세액공제, 고용을 위한 수당

(PPE)의 증액이라는 조치가 있다.

제 외국의 합계 출생률 추이를 보면 프랑스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미국(2.05(2005년))에 이어 높은 출생률(2.00(2006년))을 보인다. 주요 국가별 합계 출생률은 영국1.79(2005년), 스웨덴 1.77(2005년), 독일1.34(2005년), 이탈리아1.32(2005년), 일본1.26(2005년), 한국1.08(2005년) 등이다.

이러한 높은 출생률은 보육 서비스, 육아 휴업제도, 아동수당 제도 등 여러 가지의 가족정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는 것이 기여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지만 “프랑스에 있어 출산대책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다”는 보진성의 설명은 신선하다.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애를 낳지 않는 것, 애를 임신하여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기르는 것, 애를 낳아 일을 하면서 기르는 것, 어떠한 선택지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프랑스 가족정책의 목표라는 것이었다.

출생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책을 강구한 것은 아니고 개인의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출생률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의 가족정책】**

구 분	프랑스	독일
출생률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대는1.8정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이</li> <li>- 90년대에 들어 일단 1.7로 하회하고 그 후 급속도로 회복, 2006년에는 2.0 상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0년대 이후 급속히 저하하고, 90년대 중반에는 1.24까지 저하</li> <li>- 그 후는 거의 회복하지만 1.3정도까지 추이(2005년 1.34)</li> </ul>
육아 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가 3세 될 때 까지 육아수당에서 첫째는 6개월, 둘째 이후는 3세까지 임금 보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가 3세에 될 때까지 양친 합해 최장 3년 취득 가</li> <li>- 2007년 이후 태어나는 아동에 대하여는 12개월간 종전 수입의 67%를 보장하는 양친수당을 도입 예정</li> </ul>
보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 탁아소, 패밀리 보육소, 인정 보육마마 등에 의해 제공</li> <li>- 3세 미만 애의 반수 가까이 보육서비스를 이용</li> <li>- 탁아소는 재정난으로 부족기미이고, 인정보육 마마가 급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독일에서는 3세 미만의 육아는 가족의 역할과의 의식이 강하고 보육의 정비수준이 낮음</li> <li>- 2005년부터 보육정비법을 시행, 가정적 보육을 포함 2010년까지 3세 미만의 20%를 커버할 수 있도록 23만 명 증원계획</li> </ul>
아동수당 ·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째이후, 20세 미만</li> <li>- 소득제한은 없으며 거출금과 국고</li> <li>- 세제에서는 N분N승 방식에 의해 어린이가 많은 만큼 세 부담은 경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애부터 18세 미만(실업자는 21세 미만, 학생은 27세 미만)</li> <li>- 소득제한은 없으며 연방 및 지방정부가 부담(세 재원)</li> <li>- 아동 공제와의 선택제(일단,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세공제가 유리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 정산)</li> </ul>



**【프랑스의 출생률 추이와 가족정책】**

- 1932년 : 기업의 임의 관행으로 행해져 온 가족급부가 법률에 기초한 법정 제도로 실현
- 1945년 : 소득세에 대하여 N분N승방식 도입(1946년부터 활용)
- 1948년 : 어린이 수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족 급부에 주택수당 도입
- 1981년 : N분N승 방식의 확충(셋째 아이 이후 가족除數를 0.5에서 1로 인상)
- 1982년 : 가족문제전국회의 개최(의회, 내각, 노사, 가족관계 단체, 전문가 등이 증가하고 원칙으로 매년 개최. 1994년에 가족에 관한 법률에서 정기 개최가 의무화 됨)
- 1980년대 : 가족급부 전국금고에 의해 보육시설 확대 촉진(자치단체가 수입시설 확대 프로그램의 실시를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재정 지원)
- 1985년 : 유유아를 갖는 가족에의 직접 지원 확대( 3세 미만 애를 갖는 가정에 소득제한 하에서 유아수당 지급, 양육수당은 3세 미만의 어린이를 포함 3인 이상의 애를 갖고 육아를 위해 취로를 휴직 · 제한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
- 1990년대 : 가족급부에 있어 양쪽 지원 확대
- 1990년 : 인정 보육 마마고용에 대한 지원을 창설하여 이것에 의해 1990년대에 인정보육 마마의 수가 대폭으로 증가
- 1995년 : 양육수당을 애 2명의 세대에도 적용하여 육아 휴업 중의 소득보호를 충실하게 함
- 2003년 : 유유아 환영 수당의 창설, 출산육아와 취로에 관해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인정보육 마마고용 원조와 양육비 수당 등을 재편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임금보조, 일하는 경우에는 인정보육 마마비용 보조의 선택으로 하며 임금 보조는 첫 번째 아이에게도 확대함)
- 2005년 : 출산육아와 취로에 관한 선택의 폭을 보다 넓힘(제3번째 이후의 아이에 대해서는 취업중단이 장기에 걸쳐 복직이 어렵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휴업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대신에 임금 보조를 약 5할 증가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택지 창설)

**【프랑스의 출생률 추이】**

2.91(1964년) ⇨ 1.95(1980) ⇨ 1.66(1994년) ⇨ 2.00(2006년)

## (5) 출생률 상승과 가족정책

### ① 가족정책의 실재

가족정책은 부모 특히 모친의 출산, 육아와 일의 양립을 충족하는 것이다. 직업과 가정생활, 사회생활과 개인생활, 이들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에 대하여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애를 기를까, 일을 하면서 베이비 시터 등을 활용하면서 애를 기르게 할까 또는 애를 낳지 않는다고 하는 선택지의 자유 보장이다.

저출산 대책이나 출생률 상승이 목적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결과로서 애가 늘었다. 애를 낳는 것을 촉진하는 정책은 아니다. 혹시 어린이를 원한다면 그 때 그 때 일의 면에서 희생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 것처럼 보육 등 재정면에서 고려하고 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는 원하는 애의 수와 실제 애와의 수에는 갭(gap)이 생기고 있다.

90년대 후반, 출생률이 저하한 시기에 가족정책의 방향성이 변경되었다. 빈곤 가정을 지원하고 가족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에서 수입에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생각에 서서 일과 가정의 양쪽 지원으로 변했다. 이 전환이 출생률 상승에 공헌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공헌했을까를 재보는 것은 곤란하다.

### ② 합계 출생률 상승과 그 배경

2006년에 출생률은 2로 되었다. 세대의 갱신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치로 되었다. 아일랜드와 함께 프랑스는 구주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게 되었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애가 늘어나고 있다. 소득계층이 출생률 변화에 특히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애를 낳을까 어떨까는 재정상황 만이 아니고 주택, 고용 등의 요인에도 기인한다.

신생아 2인에 1인은 사실혼 커플에서 생기고 있다. 또한, 부부2조에 1조는 이혼하고 있다. 각 가족에는 사정과 역사가 있고, 국가가 애를 낳을까 아닐까에 개입할 수 없다.

가족수당은 원칙으로 2번째 애부터 지급되지만, 애를 맡기는 경우에는 첫째 애부터 가족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 나. 독일

### (1) 최근의 개혁과 세원배분

메르켈 정권의 세제개혁은 삼엄한 재정상황 속에서 마드리드조약에 의한 재정적자 3% 기준을 채우기 위한 재정 건전화와 독일의 법인세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기 호전으로 세수 증가도 있고 2006년에 마드리드 조약 기준은 달성되는 것으로 되었지만, 3%라는 기준은 불경기에 대한 예외적 조치이고 여전히 거액의 누적 채무로 되어 재정 건전화는 끝나고 있지 않다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율 인상(16%⇒19%)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45%)을 실시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의한 증수분의 3분의 2는 재정재건에, 3분의 1은 실업 보험료 인하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증세 조치에 의해 재정재건에 일정의 용도가 붙은 것에서 2008년 1월부터 법인세 개혁 실시에 합의한다. 법인세 개혁에는 법인세율의 인하(25%⇒15%)에 의한 법인 실효세율의 인하(약 39%⇒30%), 영업세 손금 삭감의 부인 등 과세 베이스의 확대 등에 의한 네트 감수액의 억제(감수액의 6분의 5를 보전),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 분리과세(25%) 도입(2009년 1월부터 실시 예정)등을 예정하고 있다.

독일에 있어 연방, 주 및 시군구 세수 합계는 약 4,795억 유러(2004년)이다.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EU에서는 유럽공동세로서 EU차원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독일의 입법권은 매우 제한적임)의 3세는 세수가 연방, 주 및 시군구에 소정의 비율로 배분되는 「공동세」제도이다. 공동세 세수는 전체 세수의 약 7할을 차지한다.

주된 연방세로는 석유세, 담배세가 있다. 또한 주세로는 자동차세 및 상속·증여세가 있다. 주요한 시군구세로는 영업세 및 부동산세가 있다.

【2004년도 독일의 주요 세목별 세수 규모】

구 분	금 액(백만 유러)	비 율(%)
공 동 세	332,976	69.4
- 소득세(개인소득세)	182,487	38.1
- 법인세(법인소득세)	13,123	2.7
- 매상세(부가가치세)	137,366	28.6
연 방 세	87,613	18.3
- 관세	3,059	0.6
- 보험세	8,751	1.8
- 담배세	13,630	2.8
- 커피세	1,025	0.2
- 브랜디세	2,195	0.5
- 스파클린 와인세	436	0.1
- 석유세	41,782	8.7
- 전기세	6,597	1.4
- 기 타	10,138	2.1
주 세	19,797	4.1
- 상속. 증여세	4,283	0.9
- 부동산 취득세	4,669	1.0
- 자동차세	7,739	1.6
- 도박. 추첨세	1,885	0.4
- 화재보험세	353	0.1
- 맥주세	787	0.2
- 기 타	81	0.0
시군구세	39,109	8.2
- 부동산세(토지세)	9,939	2.1
- 영업세	28,373	5.9
- 기 타	797	0.2

- 공동세는 전체의 70% 정도이며 공동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매상세가 들어간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방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연방과 주가 50%씩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방과 주의 배분율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연방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연방상원의 동의 하에 연방법률로 정하도록하고, 대신 연방헌법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연방세는 개별 간접세가 중심임
- 주세는 주로 자산 과세임
- 시군구세는 주로 영업세와 부동산세임

독일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2002년에 0.0%, 2003년에 -0.2%로 되었지만 2006년은 2.3%까지

회복한다. 그에 따라 재정적자의 대 GDP에 대한 소위 마드리드 조약의 기준인 -3.0%를 2006년에는 하회한다.

## (2) 조세체계

독일의 국민 부담률은 51.3%이다. 주요국 중에서는 일, 미, 영, 독, 불 중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높다. 조세 부담률 27.5%는 주요국 중에서는 중간 위치이지만 사회보장 부담률은 23.8%로 프랑스 다음으로 높다.

조세 부담률의 구성 내역으로는 소비과세 부담률이 가장 높고(13.7%), 1970년대 이후 10% 이상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이상 2004년 통계).

소득세(1,456억 유러)가 최대의 세수 항목이지만 부가가치세(1,397억 유러)도 거의 동일 수준의 세수(2005년의 통계)다. 2007년은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세수가 소득세 세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조세체계는 글로벌리제이션 혹은 구주라는 큰 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기업은 법인세 세율이 높으면 국외에의 소득 이전을 피하려 하는 것, 개인도 자산을 가지면 소득세율이 낮은 국가로 거소를 바꾸는 것이다.

또한, 정규 고용의 노동 코스트가 세부담 때문에 상승하면 불법 노동문제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고 현 정권하에서 세제개혁(부가가치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을 비롯, 소비과세에의 이동이 추진되고 있고 금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3) 법인세 개혁

2008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법인세 개혁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과세 누락을 억지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다. 즉, 독일 국내에서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조달 비용 등에서 해외로 소득을 옮기는 기업에 대한 대항책을 강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혁이다.

실효세율의 인하와 함께 과세 베이스의 확대조치를 행하는 것에서 전체로는 감수액의 6분의 5를 보전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그 증거다

## 【법인세 개혁 내용】

○ 개 요 : 2008년 1월 예정

- 법인세율 인하(25%⇒15%)에 의한 법인 실효세율 인하(약 39%⇒30%)
- 과세 베이스의 확대 등에 의한 넷의 감수액 억제(감수액의 6분의5를 보전)

○ 배 경

- 독일 국내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해외에 소득을 이전하는 기업에의 대응
- 기업의 국내투자에 의한 고용창출, 임금상승, 소득세, 사회보험료의 증수

특히, 시군구의 귀중한 자원인 영업세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중시한 개혁을 예정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시군구는 매우 어려운 재정상황에 있다. 시군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으면 공공사업을 할 수 없고 내수를 촉진할 수 없다. 연립정권 수립시에 영업세에 대하여는 안정적 세입을 가져오는 재원으로 하도록 위치 지었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연방 재무성도 영업세는 시군구가 기업에게 행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 있어 “독일에 있어 영업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하려는 생각과 지방세에 대해서는 외형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생각이 있지만 후자의 방안이 더 우수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4) 재정정책과 세제 평가

경제가 상향하는 측면도 있고, 2009년에는 재정수지 흑자가 실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과 같은 공적 채무로 나오지 않는 채무가 이후 고령화에 의해 증대할 우려도 있다.

조세 부담률은 2006년, 2007년 매년 내려가고 있다. 재정 건전화는 세출 삭감에 의한 바가 크다. 4년 연속 마드리드 기준 위반이라는 상황이 없었다면 3%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할 수 없었다.

그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야 말로 재정 건전화를 향한 시도를 가능하게 했다. 3% 기준은 경기가 나쁠 때의 백업 존이다. 재정구조를 바꾸어 누적채무를 삭감하는 것이 목표이다.

경기의 회복도 있고 2006년에 마드리드 기준은 달성되었다. 그렇지만 채무 잔고의 삭감이 목표이다. 마드리드 조약의 본래 목표는 재정균형이다.

경기가 나쁠 때 3%까지 허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더블 트릭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즉, 1년째는 재정 건전화를 보다 중시하면서 2년째에는 경제 성장에도 배려하고 있다.

재정 건전화에는 세출 삭감도 기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세만으로 재정재건을 꾀하려는 인식도 있지만 옳지 않다. 이번의 재정 재건은 60%가 세출 삭감, 40%가 세입 증대에 기인한다.

대연립 정권에서는 3가지 중요한 정책과제가 있다. 1) 경기확대를 위한 내수 확대정책, 2) 마드리드 기준의 클리어, 세출 삭감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성장이 필요하며 조금 세입이 늘어난다 해도 세출을 늘리는 셈은 아니며 이제부터라도 안정 성장을 확보해 가기 위한 시책이 중요함 3) 기술혁신,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사회의 변화에 대처해 갈 필요 등이다.

연구개발, 교육, 보육이라는 장래에 대한 투자는 중요하다. 연금제도, 의료개혁 제도, 노동시장의 개혁이 과제다.

단년도 재정수지 흑자는 1964년 이래 성공하고 있지 않다. 이제까지 경험에서 누적 채무의 삭감 목표를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신규채권 발행이 피크시의 400억 유러에서 200억 유러로 감소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 (5) 장래의 조세체계

구주는 이미 각 국 단위는 아니다. 각 국은 말하자면 EU의 지방화이고, 이 흐름은 이제부터 더욱 진행될 것이다. 독일의 제 개혁은 이러한 EU의 협조·조화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리제이션 혹은 구주라는 큰 틀 속에서 소득과세가 안는 문제가 인식되어 소비과세로의 이동이 생각된다. 기업은 법인세가 높으면 국외로의 소득 이전을 꾀하고 개인도 자산을 가지면 거소를 바꾸려 한다.

사회적으로 곤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연금 취득개시 연령을 인상하는 한편으로 경쟁력을 높여 장래에 마이너스 유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기업의 세율을 인하하고, 자본소득에 관한 세율을 내리고 있다.

이번의 세제개혁은 장기와 단기의 2가지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장기적인 과제는 재정기반의 강화다. 마드리드 기준의 요청과 함께 헌법 115조에 정부의 신규 차입은 정부 투자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룰(골덴 룰)이 있지만 현재는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마드리드 기준을 클리어 할 수 있는 예산을 짜는 것이다. 단순히 경기의 호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재정적자 감축이다.

다만, 2008년도는 기업세의 개혁에 의해 다소의 감수가 예상되고 있고, 재정 건전화 속도는 아직 약하다.

부가가치세 인상의 증수분 중 실업 보험료 인하분 이외는 재정 건전화에 향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다. 마드리드 조약에 의해 구조 적자를 개선하는 것은 필히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수를 항상 적으로 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 (6) 부가가치세율 인상 이유

소득세나 법인세 만이 아니고 부가가치세의 인상을 채용한 것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우선, 부가가치 세율(16%⇒19%)이 EU 평균보다 낮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번 인상은 평균적인 세율로 되었다는 정도이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일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수출품에는 비과세하고 부가가치세율을 올려도 수출품 경쟁력은 저하하지 않는다.

독일은 주간의 부가가치세수 배분은 그 중 75%를 인구비례로 한다. 나머지 25%는 인구가 적고 구조가 약한 지방에 분배한다. 소비자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업과의 사이에 지리적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분포(인구비)에 의해 배분한다.

법인과세는 많은 국가에서 국세만으로 되어있다. 독일에서는 법인세에 더하여 영업세 부담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업세와 법인세의 통합 목소리도 나오지만 시군구가 반대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업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업세 산출방법의 간소화가 이번 개정의 또 하나의 취지다. 영업세는 시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세금이다. 시군구는 세율을 각 자가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등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개혁에서는 영업세를 안정적인 세입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취지다. 영업세 세수를 유지하는 방향은 시군구가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의한다.

영업세의 과세기준은 수익이 기본으로 되지만 지불금리나 임대료도 모두 산정기준에 들어가는 외형표준적인 면을 갖는다.

영업세와 법인세 산정 기준을 완전히 갖게 하는 방안과 지방세에 대해서는 외형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방안이 있다. 영업세 폐지론도 있지만 연립 정권에서는 영업세를 시군구의 안정적 재원으로 위치 지우고 있다.

영업세에 대해서는 30년간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시군구 레벨에서는 법인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하지만 100년 간 계속해 온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상당한 곤란을 수반한다.



개혁안에는 영업세의 세율 인하라는 항목이 들어 있었지만 시군구가 실제로 내릴까 어떨까는 알 수 없다. 시군구에서 독자로 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시군구의 재산세 (부동산세)를 강화해 가는 것은 메리트가 없으므로 반대가 많다. 시군구가 세율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부동산세는 투자 촉진에 이용되고 있다.

덧붙여 주세인 토지 취득세 3.5%가 있다. 이것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하는 독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순간, 그에 따라서 시민에 대하여 세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납세자 번호가 아닌 세무서 번호로 과세함으로써 이사를 하면 번호가 바뀌었다. 앞으로는 통일적 납세자 번호가 2010년까지 도입된다. ☺

